

3.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중개정조례안

☐ 개정이유

동 조례는 준도시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의 기준이 되는 조례로 제8조와 관련한 건축물의 규모제한 사항중 용적율에 관한 사항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동 조례 제8조와 관련한 공동주택 건축물 규모제한 중 별표2의 가항의 용적율 250%이하, 층고 20층 이하로 하는 경우를 용적율 200%이하로 조정.

☐ 검토보고

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함.